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5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용(이소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2

I. 개요

1.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5.
- (3) 회 부 일 : 2025. 9.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용(이소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물납(제73조) ○ 물납재산의 범위 -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납충당 재산 순서 -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채·공채→처분 제한 상장주식→국내소재 부동산→유가증권→비상장주식→상속인 거주 주택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상장주식 추가 ○ 물납재산의 범위 -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추가 (이소영의원안) - 상장주식 추가 (송언석 의원안) * 송언석 의원안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

* 이소영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45), 송언석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3)

□ 두 개정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송언석의원안은 최대주주등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 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참고로, 송언석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제도는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조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 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곤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원활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은 ‘①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50% 초과’,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금융재산이 납부세액 미달’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도 가능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¹⁾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가능

음2).

최근 5년간 상장된 유가증권의 물납은 없었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현황은 아래와 같음.

[비상장주식 물납현황]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18	11	7	15	26
물납금액	48,339	410,262	13,429	4,797,950	282,410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음.

둘째, 특히 최대주주등의 주식 매도는 해외자본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소영의원안에서 최대주주등 상장주식에 대하여 특별히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소영의원안에서 함께 제시한 PBR 0.8이하 상장기업에 대한 평가방식 개편(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임.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의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물납제도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상속재산에 대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속인이 조세 납부를 이행하기 곤란할 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소에서 매매가 용이한 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 일반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³⁾를 활용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부터 10년